

경운대학교 학생활동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격도야와 교양, 취미를 통한 정서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조성하고자 학생단체를 인정하고 이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경운대학교 재학생으로 조직되는 동아리 등 학생단체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매년 3월말까지 교학처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3조(등록절차) ① 신규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교학처를 경유하여 학생지도위원회(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참조)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1. 신청서
2. 회칙
3. 회원 명단
4. <삭제>
5. 사업계획서
6. <삭제>
7.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② 재등록을 할 때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회칙의 변동 사항
3. 회원명단
4. 전년도 활동실적
5. 신년도 사업계획서
6. <삭제>
7.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제4조(구성금지) 학생단체의 회원 수는 15명 이상이어야 하며(4개 이상의 학과(전공)에 분포하여야 함),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을 때에는 구성을 금지한다. 단, 장애학생, 외국인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새터민학생 등의 소수집단 학생단체의 경우에는 최소인원에 대한 제한없이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임원선출 및 임기) <삭제>

제6조(지도교수) 학생단체의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지도교수는 학생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조교수 이상의 경운대학교 교원으로 한다.
2. 지도교수는 2개 이상 학생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

할 때에는 2개의 학생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는 소속 학생단체의 행사에 참석·지도를 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가 해외 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임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학생단체는 15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비 및 지원금) 학생활동에 따른 지도교수의 지도비 및 학생단체의 지원금은 학생단체의 행사승인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예산 범위내에 총장의 승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8조<삭제>

제9조(단체활동) 모든 학생단체는 그 기능별로 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 산하 부서에 소속되어 다음과 같이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1. 등록된 학생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학생단체가 교내·외에서 행사(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승인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행사(집회)와 정상수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야간 옥외행사(집회)시 불꽃놀이, 햇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게시물은 소정 용지 규격(전지 이하)으로 한정하고 지도 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서 검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부착 당사자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매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개시 10일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각 학생단체의 행사(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제10조(학내잔류 허가) 학생단체가 과외활동을 위해 평일 또는 공휴일에 학내에 잔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류승인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해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서관은 제외)

제11조(행사(집회)) ① 학과 단위의 학생행사(집회)인 경우 : 행사(집회)승인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교학처로 제출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동아리의 학생 행사(집회)인 경우 : 각 동아리 회장은 행사(집회)승인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교학처로 제출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2조(집회허가원의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① 모든 행사는 7일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술, 체육행사 등 단체 활동을 위하여 행사(집회) 또는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일로부터 10일 전에 행사내용 및 계획서, 예산서, 주제내용요약서, 홍보내용물

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타 대학이나 다른 기관과의 연합행사의 경우에는 15일전에 행사개최의 취지와 목적, 행사내용, 예산서, 참가인원, 홍보물 제작과 배부에 관련한 내용물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등록의 취소) 등록된 학생단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칙에 위배되는 경우
2. 기존 학생단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상 재정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인쇄물을 불법간행 및 배포할 경우
6. 1년간 행사 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7. 기타 학생단체 활동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학생단체가 설립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간행물을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제16조<삭제>

제17조(단체명칭 사용제한) 학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1.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해체, 통폐합된 명칭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명칭
3. 용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소수집단학생활동 지원)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소수집단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교수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타 대학 교내·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운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삭제>

제22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